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내 유통대리점 공개모집”
공 개 질 의 답 변

2011. 6. 2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질의 번호 : 0618-01호

□ 일 자 : 2011. 6. 18. 토

□ 질 문

1.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등본’은 참가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하나요

답변)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참가하시는 업체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의 번호 : 0620-01호

□ 일 자 : 2011. 6. 20. 월

□ 질 문

1. 매출 규모 평가와 관련하여, “삼다수의 매출 부분” 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모든 유통관련 총 매출 부분” 에 대해 평가하는 것인지

답변) 유통과 관련한 모든 매출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2. 계약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료가 되면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운영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 계약이 되는지

답변)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질의 번호 : 0620-02호

□ 일 자 : 2011. 6. 20. 월

□ 질 문

1. 연매출 3억 미만인 장부기재 제외대상 업체인 경우 재무제표 (혹은 표준재무제표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데 이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없는지

답변) 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대차대조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질의 번호 : 0620-03호

□ 일 자 : 2011. 6. 20. 월

□ 질 문

1. 대표이사가 여럿(공동대표)인 법인의 경우 참가신청서 등의 서류에 공동대표 모두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사용인감 하나만 날인하는지

답변) 공동대표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법인인감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중 1인을 선임(선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등- 제출)하여 각 필요서류에 선임자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